

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등)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2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미탄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의 건립과 2011년 개최되는 제46회 강원도민체전 및 각종 경기 유치 여건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결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며,
-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입안내용
 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2건(신설 2건)
 - 체육시설(체육관) 2,842㎡
 - 진입도로(소로1-1) L=185m, B=10m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 검토 : 별도의견 없음
- 주민의견청취 : 2009. 11. 16 ~ 2009. 11. 30 (14일간)
 - 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 게재 및 평창군 홈페이지, 미탄면 게시판 공고
 - 공람 의견 없음

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등) 결정(변경)(안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총괄 조서

■ 용도지역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2,842	-	2,842	100.0	
농림지역	2,842	감) 2,842	-	100.0	
관리지역	계	증) 2,842	2,842	100.0	

■ 용도지역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7	평창군 미탄면 창리 1305 일원	농림지역	계획관리지역	2,842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을 목적으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로 결정하고자 함.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총괄 조서

■ 해당사항 없음

다.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

1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체육시설

■ 체육시설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7	체육시설	생활체육시설 (체육관)	창리 1305 일원	-	증)2,842	2,842	-	-

■ 체육시설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7	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, 면적: 2,842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을 목적으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로 결정하고자 함.

2) 교통시설

(1) 도로

■ 도로총괄표

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
합계	1	185	1,861.2	1	185	1,861.2	-	-	-	-	-	-
중로	-	-	-	-	-	-	-	-	-	-	-	-
소로	1	185	1,861.2	1	185	1,861.2	-	-	-	-	-	-

■ 도로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합계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경과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1	10	국지도로	185	창리 1303	창리 1281	일반도로	-	-	-

■ 도로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1-1호선	■ 폭원 : 10m, 연장 : 185m	■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진입 도로 신설

라. 토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		면 적 (㎡)		소 유 자		비고
	위치	지번	지목	지적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
	계			12,000.2	4,703.2		-	-
1	미탄면 창리	1281	도	4,824.1	105.0	국(농림수산부)	-	-
2	미탄면 창리	1303	구	1,162.1	817.0	국(농림수산부)	-	-
3	미탄면 창리	1304	도	1,340.5	1,015.0	국(농림수산부)	-	-
4	미탄면 창리	1305	답	2,746.2	2,746.2	평창군	-	-
5	미탄면 창리	1308	답	1,927.3	20.0	강지훈	평창군 미탄면 창리 288	추후 매입 예정

마.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○ 관련부서 협의

- 주민생활지원실, 민원봉사과, 재무과, 문화체육과, 환경과, 산림과, 건설방재과, 상하수도사업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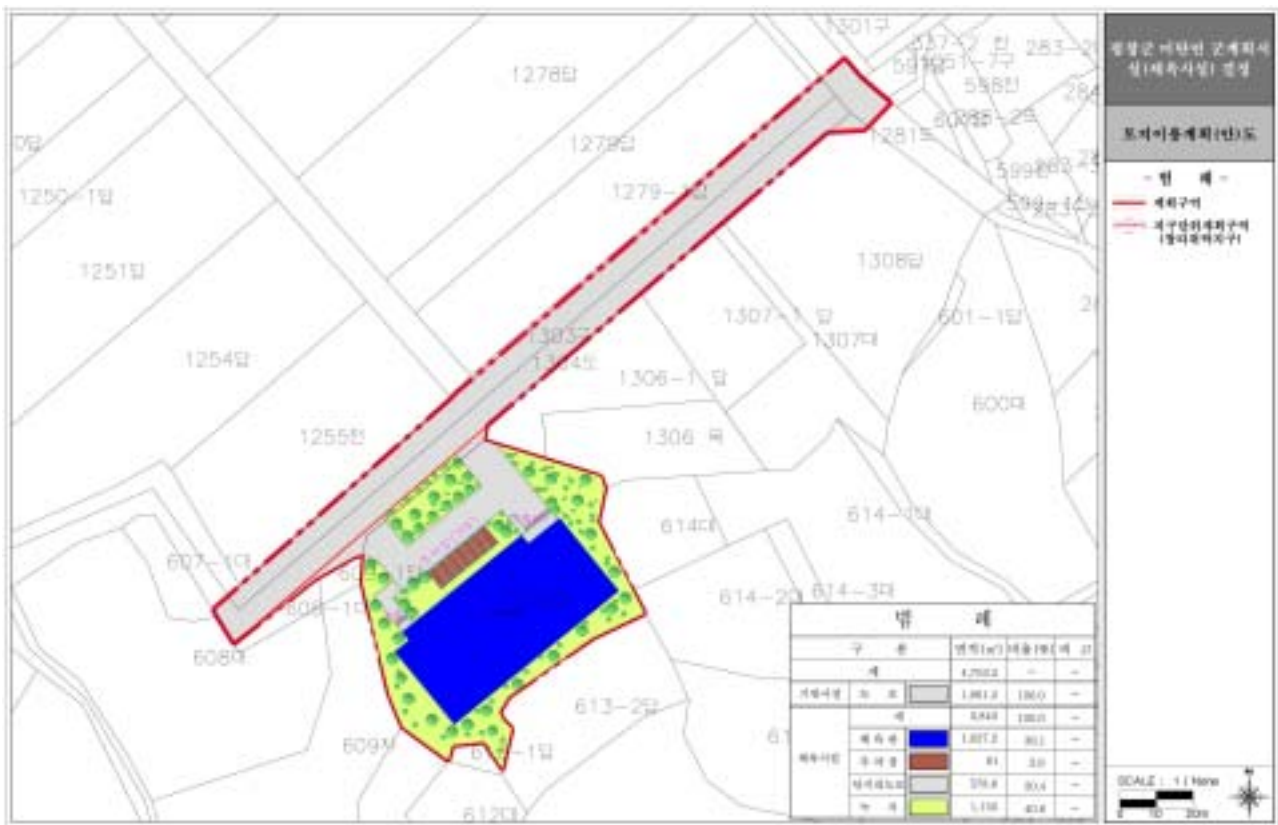
⇒ 별도 의견없음

- 농축산과

⇒ 강원도지사와 협의 요함(농지분야 협의서 강원도 제출)

바.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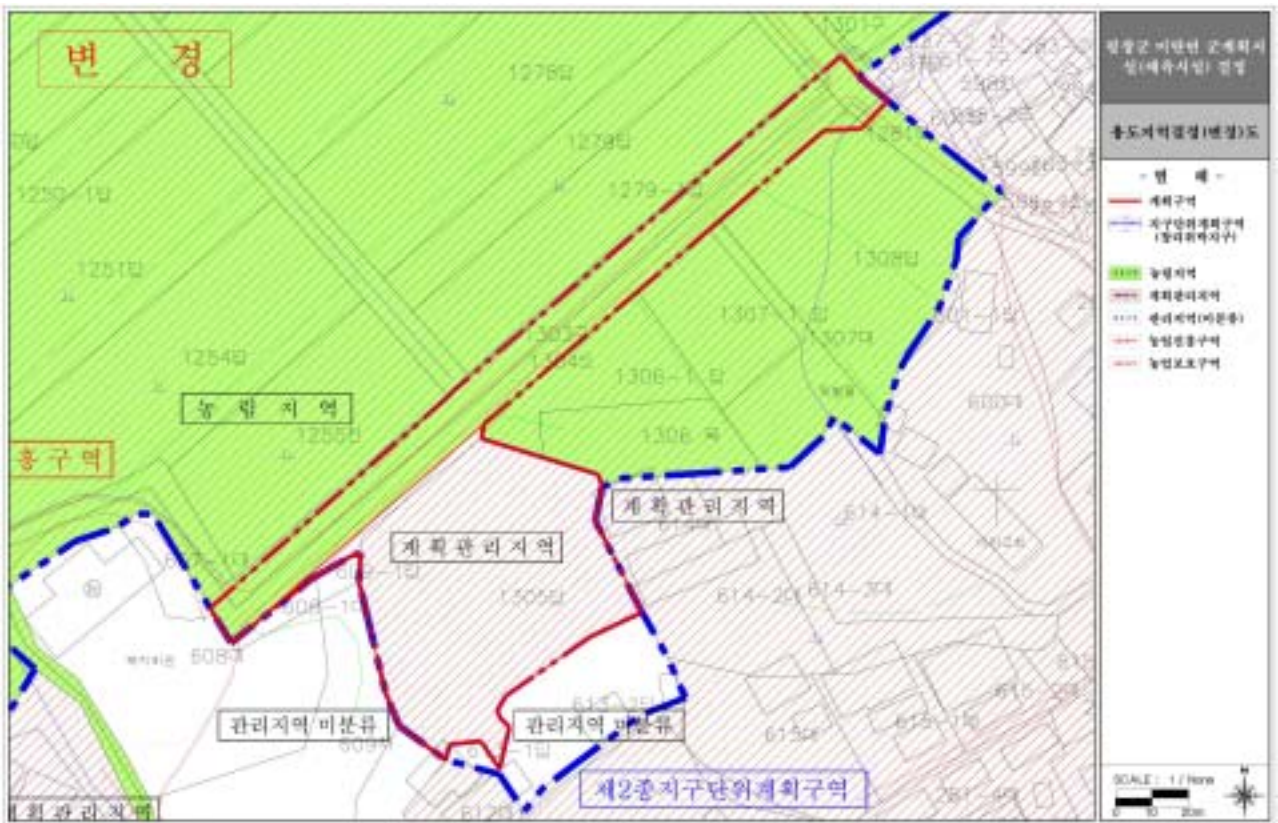
< 토지이용계획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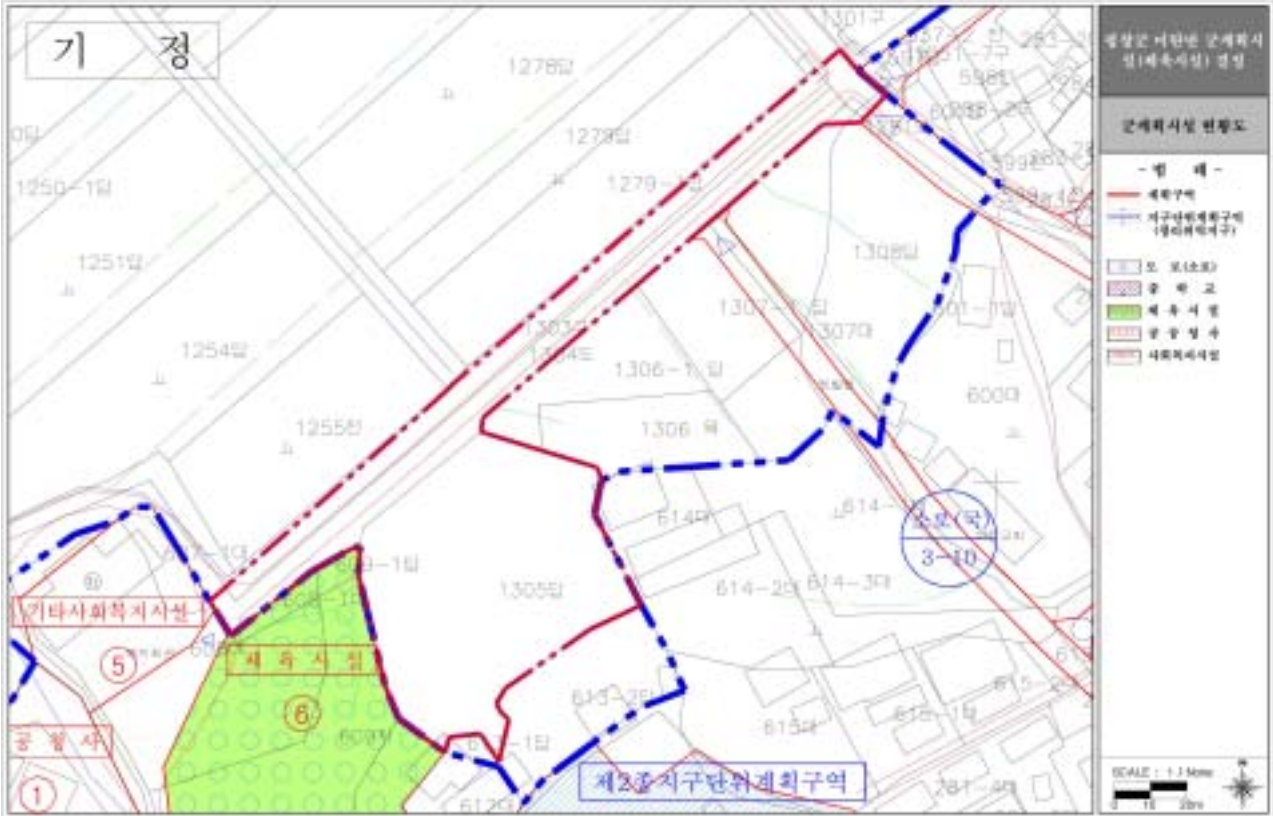
< 용도지역 현황도 >



<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>



< 군계획시설 현황도 >



<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>



관련법규 발취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⑤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

-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
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)
 - 마. 유통업무설비
 - 바. 학교중 대학
 - 사. 운동장
 - 아. 삭제 <2005.9.8>
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- 차. 화장장
 - 카. 공동묘지
 - 타. 납골시설
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